

FTA 100% 활용하기

FTA의 발전과정과 최근 동향 및 시사점

박정준 | 강남대학교 글로벌경영학부 교수

FTA의 발전과정과 최근 동향 및 시사점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존재감이 워낙 크고 확고했기 때문에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던 시기가 있었다.

FTA는 그 명칭에서처럼 일부 이해관계가 맞는 국가들 사이에 시장 개방을 추가확대하는 효과, 정치·외교적 관계 강화 정도만을 위한 협상과 협정 정도로 여겨졌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FTA의 발전 과정, 그리고 최근의 일부 결과물들을 보면 이러한 평가는 이제 180도 전환되어야 한다. 국제무역에 있어 FTA 활용의 중요성은 지속해서 높아졌고 특히 최근 FTA에서는 기존 FTA와 차별화된 내용이 담겨있어 이를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의 활용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박정준
강남대학교
글로벌경영학부 교수



I. 국제통상체제로써의 WTO와 FTA

‘무역’이란 기본적으로 국가와 국가 사이에 행해지는 상품과 서비스의 상거래를¹⁾ 의미하므로 1차원적으로 경제적 이익만을 무리하게 쫓다보면 국가 간 경제 마찰로 발전하는 것은 물론 심각한 정치 외교적 갈등까지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무역활동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기업과 개인들이 큰 피해를 보는 것도 불가피하다.

따라서 무역활동이 지속가능하게 운영되고 또 ‘무역을 통한 이익(gains from trade)’을 실제로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시장 개방, 무역장벽 완화 등 무역활동과 관계된 제도와 관행들을 어떻게 재정비할 것인지 등 대외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국내외의 구체적인 합의를 이뤄내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상 이러한 합의 및 이행은 당사국 간 협상

을 통한 규범 마련과 이를 담은 협정을 통해 일종의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에서부터 담보될 수 있다. 국가 간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일종의 무역 환경이자 시스템들의 집합체를 국제통상체제라고 이해하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제무역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위해 1947년 완성되어 이듬해인 1948년 발효되었고 WTO의 전신(前身)으로도 잘 알려진 국제적으로 합의된 최초의 국제통상규범인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은 최초의 국제통상체제로써 그 기틀을 닦았다.

이를 토대로 총 여덟 번의 통상협상을 거치고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UR; 1986~1994)의 최종 결과물로써 1995년 1월 1일 설립된 WTO는

1) 조영정, 「무역정책」, 박영사, 2016, p.3.



기존 국제통상규범 수준에 머물던 GATT를 그대로 편입한 뒤 국제통상기구 수준까지 발전시킨 바 있다.

GATT는 최종 128개국이 서명, WTO는 현재 164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는데²⁾ 이처럼 무역행위를 하는 사실상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방식의 국제통상체제를 다자통상체제(multilateral trade system)라고 부른다.

이렇게 출범한 WTO는 2001년 UR 다음이자 제9차 다자통상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를 공식 개시했다.

그러나 일괄타결(single undertaking)과 만장일치(consensus)를 기본적인 의사결정방식으로 운영하는 WTO의 특성에다가 21세기 들어 선진국과 개도국, 수출국과 수입국 간 이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 더해지면서 2021년 현재까지도 협상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20년의 장기 표류를 이어가고 있다.

바로 이러한 WTO의 공백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메꾸고 국제무역이 안정적인 자유무역 지향으로 계속

될 수 있게 그 자리를 대체해준 것이 바로 국가들 사이에 FTA이고 이를 지역통상체제(regional trade system) 혹은 복수통상체제(plurilateral trade system)라고 말한다.

이제 국제통상체제로써의 FTA의 역할은 기존 GATT나 WTO에 유사한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볼 수 있다.

WTO가 설립되기 이전의 20년과 출범 직후 20년의 DDA 표류과정을 비교해보면 확실히 그 사이 국가 간 무역은 양적, 질적 모든 측면에서 훨씬 더 심화되어 온 측면이 있고 여기에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이 획기적으로 발전되면서 상품 무역 이상으로 서비스 무역의 비중이나 중요성이 커졌으며, 무역과 연계된 환경, 노동, 인권 등 전통적으로는 통상 외적인 요소로 치부되곤 했던 분야들까지 결합되면서 훨씬 더 복잡해졌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팬데믹 등을 겪으면서 비대면, 이른바 언택트(untact) 시대로의 진입이 가속화됐고 그 와중에 기존의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이 지역가치사슬(Regional Value Chain, RVC)로 재편되기도 하면서 1995년 설립 당시 이후로 가시적이고 현실적인 체제 전환(paradigm shift)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WTO만으로는 국제무역을 지탱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새로운 국제통상체제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와 기대가 계속해서 높아져 왔는데 바로 여기에 FTA가 그 역할을 십분 충당해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https://www.wto.org/index.htm>

II. 과거 FTA의 역할과 내용

FTA 협정은 기본적으로 WTO 협정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참여하는 복수국 간 실정에 맞게 더 공격적인 취지의 무역자유화를 위한 규범들을 담고 있고 따라서 협정의 구조나 구성이 WTO의 그것과 매우 유사한 편이다.

이 때문에 흔히 FTA를 WTO 보다 공격적인 자유 무역을 추진하고 규범이 발전되었다는 의미에서 WTO 플러스(+) 협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WTO가 국제통상체제의 역사적 관점에서 FTA와 비교했을 때 근본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무조건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실제 FTA의 역사가 WTO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고 이미 GATT나 WTO가 수립되었던 20세기 이전부터 존재해왔기 때문이다.

여러 의견이 있지만 최초의 FTA로써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1860년 1월 서명된 영국과 프랑스 간의 협정이다.³⁾

흔히 영불조약(英佛條約)이라고 불리지만⁴⁾ 당시 양국의 협상대표를 맡았던 관료인 영국의 리처드 코브던(Richard Cobden, 1804~1865)과 프랑스의 미셸 슈발리에(Michel Chevalier, 1806~1879)의 이름을 따서 코브던-슈발리에 조약(Cobden-Chevalier Treaty)이라고 부르기도 한다.⁵⁾

무역자유화를 위하여 단지 두 국가가 참여했다는 점에서 FTA로써 가장 기본적인 조건들은 갖추었지만 이하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할 현대의 FTA와 비교해서는 역시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FTA로는 가장 원초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는 이 협정은 단순히 참여국 간 상품무역에 대한 자유화에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되는데 구체적으로 1860년의



3) 최병선, 「무역정치경제론」, 박영사, 1999, p.312.

4) Ibid., p.313.

5) 구민교, 「국제무역의 정치경제와 법: 자유무역 이상과 중상주의 편향 사이에서」(개정판), 박영사, 2021, pp.136~137

조약 이후 두 국가가 취한 조치를 보면 확인이 된다.

영국의 경우 이 협정으로 상대국인 프랑스에 대한 관세부와 대상 품목을 419개에서 48개로 크게 줄였고, 포도주 및 브랜디에 대한 관세 역시 인하했다.

프랑스는 영국에 대해 비관세장벽이라고 할 수 있는 수입 금지조치 전부를 철폐하고 5년 후에는 기계류와 석탄, 섬유 그리고 철강에 대한 관세 상한을 25%로 낮추는 것에 합의했다.⁶⁾

과거 FTA들이 지금과 비교했을 때 보다 상이한 역할과 내용을 가진 사례는 비교적 최근에도 찾을 수 있고 일부 주요국의 경우에서도 발견되어 주목할 만하다. 우선 미국의 경우 1985년 최초의 FTA를 이스라엘과 발효했다.⁷⁾

미국은 유럽과 함께 GATT와 WTO 중심의 다자통상체제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리더십으로 지대한 기여를 했으며, 그렇기에 상대적으로 WTO설립과정까지는 FTA에 대한 관심이 낮았다.⁸⁾

권오복(2005)의 설명처럼 미-이스라엘의 FTA는 미국의 첫 번째 FTA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FTA나 특히 최근의 주요 FTA와는 대조적으로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정치·외교적인 동기가 큰 협정이었다.⁹⁾

유럽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을 통해 2006년 10월 신통상정책(Global Europe: Competing in the World – A Contribution to the EU's Growth and Jobs Strategy)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주요 정책수단 중 하나로 FTA가 등장한다.¹⁰⁾

해당 정책문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전까지 EU에게 FTA란 인근 국가들과의 경제와 규제적 결속을 강화하고(reinforcing economic and regulatory ties) 과거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카리브 및 태평양 국가들(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countries)과의 경제협력을 위한 성격이 강했다.¹¹⁾

6) 최병선, 「무역정치경제론」, 박영사, 1999, p.313.

7) <https://ustr.gov/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israel-fta>

8) 권오복, “미국 FTA 추진 동향과 전략”, 「KREI 논문」, 2005, p.4. 본 논문에서 이와 관련되어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다자간 무역체제를 선호해 왔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9차례에 걸친 GATT 및 WTO 협상을 주도하는 등 다자간 무역체제의 지도자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그러나 지난 20년간은 다자무역체제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쌍무적인 FTA도 병행하였다.

9) Ibid. 본문에서 저자는 미-이스라엘 FTA를 경제적 실익은 크지 않고 정치적 이득을 부여한 미국의 새로운 FTA 정책의 단면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10) 안덕근, 「EU의 대북미 통상전략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pp.31~32.

11)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Global Europe: Competing in the World – A Contribution to the EU's Growth and Jobs Strategy”,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THE EUROPEAN PARLIAMENT,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2006, pp.8~9. 해당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FTAs are by no means new for Europe. For example, they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European neighbourhood by reinforcing economic and regulatory ties with the EU. They are part of our negotiations for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s with the 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countries and of future association agreements with Central America and the Andean Community.

〈표 1〉 시기별 미국과 EU의 주요 FTA상대국¹²⁾

발효 시기	미국의 주요 FTA상대국	EU의 주요 FTA상대국
1980년대	이스라엘	
1990년대	캐나다, 멕시코(NAFTA)	터키
2000년대	요르단, 싱가포르, 칠레, 호주, 모로코, 도미니카-중미, 바레인, 오만, 페루	이스라엘, 요르단, 칠레, 멕시코
2010년대	한국(2019년 개정), 콜롬비아, 파나마	한국, 싱가포르, 일본, 캐나다, 우크라이나
2020년대	캐나다, 멕시코(USMCA)	베트남

〈표 1〉에서 정리한 미국과 EU의 시기별 FTA 상대국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종합적으로 1990년대 중반까지의 미국, 2000년대 중반까지의 EU를 중심으로 하는 FTA의 역할과 내용은 정치나 외교, 경제에 대한 부분도 협력을 중요시하는 성향이 강했으며 실제 무역협정으로서의 시장개방이나 무역장벽 해소와 같

은 역할은 재언하지만 GATT와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통상체제에 의존했던 부분이 크다.

앞에서 언급한 FTA를 중심으로 한 최근 지역통상체제의 위상이나 역할을 상기하면 확실히 많은 차이가 있다.

III. FTA의 발전 계기와 과정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FTA에 대한 인식이 바뀐 시점과 계기에 대해서는 최근 FTA의 역할과 내용에도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보다 면밀한 관찰과 분석을 요한다.

미국의 경우는 캐나다, 멕시코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협상을 UR과 병행하고 이를 WTO 출범보다 1년 앞선 1994년 먼저 발효시키면서 FTA를 중심으로 한 지역통상체제 자체에 큰 변곡점을 만들어냈다.

안덕근(2007)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미국은 NAFTA를 시작으로 FTA를 통한 시장개방 뿐만 아니라 투자나 경쟁, 지식재산권과 같은 부차적인 경제 요소들과 관련된 규범 도입을 본격화했으며¹³⁾ FTA를 통해 명문화된 내용이 양적, 질적 모두에서 이전의 미-이스라엘 FTA 보다 굉장히 심화되고 크게 발전했다.¹⁴⁾

그리고 이는 이후 미국의 FTA들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기타 국가들의 FTA에도 구조적, 구성적으로 의미 있는 규범적 토대를 제공했다.

12) <https://www.fta.go.kr/main/situation/fta/world/>, <https://www.state.gov/trade-agreements/existing-u-s-trade-agreements/>, <https://ustr.gov/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 <https://ec.europa.eu/trade/policy/countries-and-regions/negotiations-and-agreements/> 를 바탕으로 저자 재정리.

13) 안덕근, 「EU의 대북미 통상전략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pp.44~45.

14)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files/agreements/FTA/israel/Israel%20FTA.pdf>

EU의 경우 앞에서 언급했던 2006년의 신통상정책을 통해 FTA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선언했는데¹⁵⁾ 이 당시가 최근 FTA 내용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유의미한 시점으로 사료된다.

이 시기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EU 역시도 FTA를 통해 앞선 미국의 FTA 정책과 거의 동일하게 투자, 공공조달, 경쟁과 기타 규제 분야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¹⁶⁾

그리고 정책 추진을 계기로 삼아 EU는 FTA에 대한 동력을 재확보하고¹⁷⁾ 과거 FTA정책 때와는 달리 시장의 잠재력(market potential), EU 수출에 대한 상대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 수준, 그리고 EU와 경쟁적 구도에 있는 국가와의 FTA협상 및 여기서 유발되는 EU시장과 경제에 대한 영향 등을 모두 고려해 FTA를 추진, 협상해 나갈 것을 명시하고 있다.¹⁸⁾

2000년대 중반 EU의 이러한 FTA정책의 변화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이후 EU가 기존의 유럽 대륙 내 인근 국가나 과거 식민지역을 중심으로 FTA를 추진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지역적으로 FTA의 외연을 넓히는 지평을 확보했다는 점에 있다.¹⁹⁾

본 정책문에서 EU가 아시아 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우리나라, 메르코수르(MERCOSUR), 인도, 러시아, 걸프협력회의, 중국 등을 우선 협상 상대국으로 지정한 것이 좋은 예시이다.²⁰⁾

이를 통해 유럽의 FTA도 미국이 NAFTA를 기점으로 그랬던 것처럼 보다 현대적 FTA로의 전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고 지금의 FTA 모습을 찾아나갔다.

15) 안덕근, 「EU의 대북미 통상전략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p.36.

16) Ibid.

17) Ibid.

18)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Global Europe: Competing in the World – A Contribution to the EU's Growth and Jobs Strategy",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THE EUROPEAN PARLIAMENT,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2006, p.9. 해당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The key economic criteria for new FTA partners should be market potential (economic size and growth) and the level of protection against EU export interests (tariffs and non tariff barriers). We should also take account of our potential partners' negotiations with EU competitors, the likely impact of this on EU markets and economies, as well as the risk that the preferential access to EU markets currently enjoyed by our neighbouring and developing country partners may be eroded.

19) 안덕근, 「EU의 대북미 통상전략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pp.44~46. 물론 저자의 설명처럼 EU의 FTA정책 변화 근거에는 미국의 FTA정책에 대한 방어적 의미도 포함된다.

20)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Global Europe: Competing in the World – A Contribution to the EU's Growth and Jobs Strategy",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THE EUROPEAN PARLIAMENT,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2006, p.9. 해당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ASEAN, Korea and Mercosur (with whom negotiations are on going) emerge as priorities. They combine high levels of protection with large market potential and they are active in concluding FTAs with EU competitors. India, Russia and the Gulf Co-operation Council (negotiations also currently active) also have combinations of market potential and levels of protection which make them of direct interest to the EU. China also meets many of these criteria, but requires special attention because of the opportunities and risks it presents.

IV. 최근 FTA의 내용과 전망

미국, 유럽 등 주요 경제대국이면서 과거 국제통상체제 설립을 실제 주도한 국가들이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자국 통상정책의 일환으로 FTA에 대해 새로이 인식하고 그 내용에 본격적인 변화를 추진한 '내재적 유인'과 더불어 WTO 다자통상체제 DDA표류라는 '외재적 요인'까지 겹치게 되면서 FTA를 중심으로 국제통상체제는 빠르게 재편되어 갔으며 이제는 전 세계 주요 무역국의 통상정책에 가장 핵심적인 수단 중 하나로 부상하기에 이르렀다.

나아가 WTO DDA의 거듭된 실패로 입법기능이 마비되면서 WTO 중심의 다자통상체제가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데다가 최근 몇 년 동안은 상소기구 위원 선임 실패로 그나마 FTA와 차별화 되어 다자통상체제에서 중추적 역할로 수행되던 사법기능까지 마비되면서는 FTA가 가지는 상대적 중요성이 더 부각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래서인지 최근의 FTA는 WTO협정에서는 물론 기존 FTA 협정에서도 쉽게 볼 수 없던 규범들을 공격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추세인데, 일례로 가장 대표적인 메가-FTA 중 하나인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이 대표적이다.

CPTPP에는 FTA를 중심으로 가장 기본적인 요소

인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 즉 무역자유화는 물론이고 각종 비관세장벽 문제, 지식재산권, 투자, 경쟁, 공공조달에다가 WTO에서는 다소 취약했다고 평가받던 노동(제19장), 환경(제20장), 개발(제23장) 문제에 대한 챕터를 별도로 도입했고 시대적 변화와 흐름에 발맞춰 전자상거래(제14장), 국영기업(제17장), 중소기업(제24장), 반부패(제26장) 등에 대한 챕터도 만들어냈다.²¹⁾

이는 또 다른 메가-FTA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에서도 거의 같은데 규범의 수준적 차이는 차치하더라도 구성 상 전자상거래(제12장), 중소기업(제14장), 경제적·기술적 협력(제15장) 등을 도입한 것은 최근 FTA의 내용 추세를 잘 보여주고 있다.²²⁾

FTA를 중심으로 한 국제통상체제에 큰 변화를 초래했던 기존 NAFTA를 재협상하여 타결되고 발효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 역시 제19장에 무역협정 최초로 디지털무역(Digital Trade)이라는 명칭의 챕터를 도입했고, 그 외에도 국영기업(제22장), 노동(제23장), 환경(제24장), 중소기업(제25장), 반부패(제27장) 심지어 거시경제정책과 환율에 관한 규범을 제33장에 명문화했다.²³⁾

21) <https://www.mfat.govt.nz/en/trade/free-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in-force/comprehensive-and-progressive-agreement-for-trans-pacific-partnership-cptpp/comprehensive-and-progressive-agreement-for-trans-pacific-partnership-text-and-resources/between>

22) <https://www.dfat.gov.au/trade/agreements/not-yet-in-force/rcep/rcep-text>

23) <https://ustr.gov/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united-states-mexico-canada-agreement/agreement-between>

초기 FTA가 기존 GATT와 WTO의 규범을 기초로 해서 세분화되고, 공격적으로 발전되었던 전례를 생각하면 앞으로의 FTA협상이나 WTO 개혁조차 이러한 최근 FTA들에서 만들어진 내용들을 토대로 이루어질 공산이 크다.

이전에 통상적 요소라고 생각했던 내용들에 한정하려는 생각의 틀을 깨고 노동, 환경, 개발 등 원래는 비무역적 요소라거나 무역협상에서 덜 집중하고 치부했던 내용들을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것은 물론 적극 포용하고 이해, 적응하려는 노력이 필히 수반되어야 할 전망이다.

〈표 2〉 최근 주요 FTA의 챕터 구성²⁴⁾

CPTPP	RCEP	USMCA
최초규정 및 정의	최초규정 및 일반정의	최초규정 및 정의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 접근	상품무역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원산지	원산지규정	농업
섬유 및 의류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원산지규정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원산지절차
무역구제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	섬유 및 의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무역구제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서비스무역	탄화수소에 대한 멕시코 소유권 인정
투자	자연인의 일시이동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국경 간 서비스무역	투자	무역구제
금융서비스	지식재산	무역기술장벽
기업인의 일시입국	전자상거래	분야별 부속서
통신	경쟁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중소기업	투자
정부조달	경제 및 기술협력	국경 간 서비스무역
경쟁	정부조달	임시 입국
국영기업	일반규정 및 예외	금융서비스
지식재산권	제도규정	통신
노동	분쟁해결	디지털무역
환경	최종규정	지식재산권
협력 및 역량강화		경쟁정책
경쟁력 및 비즈니스 촉진		국영기업
개발		노동
중소기업		환경
규제조화		중소기업
투명성 및 반부패		경쟁력
행정 및 제도규정		반부패
분쟁해결		모범규제관행
예외		공표 및 행정
최종규정		행정 및 제도규정
		분쟁해결
		예외 및 일반조항
		거시경제정책 및 환율 관련 사안
		최종조항

24) 산업통상자원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 공개: 정부 협정문 분석 T/F에서 정밀 검토 착수」, 산업통상자원부, 오수현 외,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 KOTRA·법무법인(유)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USMCA 원산지규정 해설서: 자동차·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KOTRA·법무법인(유)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2020을 바탕으로 저자 재정리.

V. 시사점

최초의 FTA는 상품무역에 대한 특정 국가 간 자유화 확대라는 가장 원초적인 목표에 집중하거나 GATT 및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통상체제의 보조적 역할로서 정치·외교적 목적 등에 사용되기도 했었다.

다자통상체제를 중심으로도 국제무역이 충분히 원만하게 이루어지던 시기의 일이다. 그러던 FTA가 미국과 EU의 정책 상 NAFTA와 신통상정책 등을 거치면서부터는 국제통상체제에서 보다 중심에 가까운 위치로 이동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그 내용이 WTO규범을 바탕으로 쌓아올려지듯 발전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추가적인 무역 자유화, 지식재산권 강화, 투자, 경쟁, 정부조달 등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기도 했으며 각 수준 또한 다자통상체제 보다 심화되었다.

WTO가 표류하기 시작하면서는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WTO에서 다루지 못했지만 그 중요성이 결코 가볍지 않았던 주제들이 본격 논의된 것인데 예를 들어 통상과 연계된 환경, 노동, 개발, 불평등, 반부패 등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특히 경영계에서 환경과 사회, 기업의 지배구조를 일컫는 ESG(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가 큰 화제이다.

이는 최근 FTA의 방향성과 거의 정확하게 일치한다. WTO의 개혁이 단기간 내 현실화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무역은 계속될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국제통상체제 운영에 있어 당분간은 FTA의 중추적 역할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국가 간 무역이 지속가능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의적절하고 현실적인 규범 마련과 합의된 내용이 어느 정도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많은 기업은 FTA를 적극 활용해서 무역을 통한 이익을 배가 시키는 중에도 여러 FTA들이 중첩되면서 발생하는 일명 '스파게티보울효과(Spaghetti Bowl Effect)', 그리고 함께 복잡해진 원산지 규정 충족 및 증명 등으로 적지 않은 애로를 겪기도 했다.

그런데 앞으로는 여기에 더해 무역에서 환경적 요소와 노동 관련 규범 등 신경 써야 할 것이 더 많아졌다.

또한 FTA협상을 통해 다른 나라와 합의된 이러한 내용들은 국내에 들어와 정식 발효되게 되면 우리 사회 내부의 법과 제도를 재정비하게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최근 ESG경영이 주목을 받고 있고 FTA에서 관련 내용이 도입되면 우리가 체감할 수 있고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시대적 모습들이 속속 나타날지도 모른다.

기업들은 과거 FTA에서부터 계속 유지되고 있는 추가 판로 개척, 시장다변화, 가치사슬 확대 및 활용이라는 목표에 대한 자각은 이어가면서도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와 같은 최근 FTA 규범들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의 FTA를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